



01

AI 소득안정자금 등 지원기준 조정 의견 제출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지난 1월 10일 정부의 'AI 소득안정자금 등 지원기준'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출했다. 몇 년째 지속된 사육제한에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오리농가와 오리업계에 전가된 상황에서 오리농가의 AI 소득안정자금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조정 의견을 살펴보면 전년도 인근 지역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한 오리농가의 경우 사육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회전수를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회전수 산출방식 및 지원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육용오리 수당소득을 현행 871원에서 생산비 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1,006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을 받은 오리농가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오리협회가 제출한 'AI 소득안정자금 등 지원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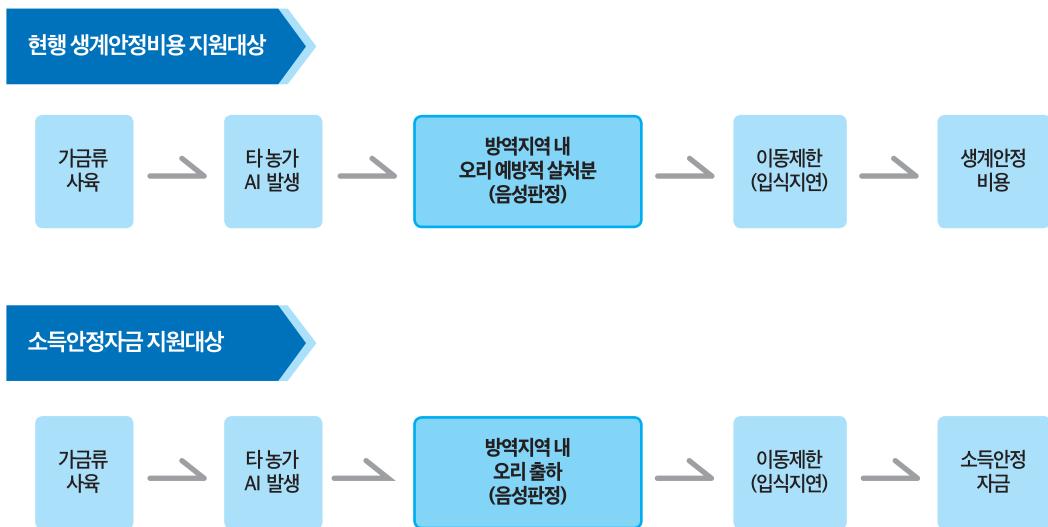
전년도 회전수 산출방식 및 지원대상 신설

-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전년도 휴지기간 산출시 2회전 사육을 추가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인근 지역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사육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회전수를 추가 적용 필요

현행	개정안
<p>◆ 정상입식 지역농가</p> <p>- 입식제한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입식예정일*</p> <p>*입식예정일 : 전번 출하일 + 휴지기간 이후 입식 예정일(계열사 업자 병아리 공급계획 확인)로 이동 제한된 날 이후</p> <p>* 휴지기간(전년도 출하실적기준) : $[365일 - (전년도 회전수 \times 사육기간)] = 휴지일 / 회전수$ (단서 신설)</p>	<p>◆ 정상입식 지역농가</p> <p>- 입식제한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입식예정일*</p> <p>*입식예정일 : 전번 출하일 + 휴지기간 이후 입식 예정일(계열사 업자 병아리 공급계획 확인)로 이동 제한된 날 이후</p> <p>* 휴지기간(전년도 출하실적기준) : $[365일 - (전년도 회전수 \times 사육기간)] = 휴지일 / 회전수$</p> <p>** 전년도 회전수에는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기간 및 이동제한 기간에 대한 회전수를 추가로 적용</p> <p>(예시 1) 52주(152주일) : $150일(30일 \times 5월) \div 57일(43일 + 14일) = 26회$ 전 추가 (예시 2) 80주(180주일) : $80일 \div 57일(43일 + 14일) = 14회$ 전 추가</p>
<p>◆ 지원대상 : 관리·보호·예찰지역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p>	<p>◆ 지원대상 : 관리·보호·예찰지역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p>

2.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조정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관련)

- 주변 가금농장 AI 발생으로 인하여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하는 오리농가의 경우 인근지역에서 AI 검사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와 동일하게 살처분 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입식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
 - 검사결과도 동일하게 AI 음성이지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방역지역 내 출하 농가와 달리 예방적살처분(음성판정) 농가는 소액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받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조정 필요



※ 닭의 경우 예방적살처분(또는 출하) 이후 이동제한 기간 중에도 재입식이 가능하므로 이동제한기간동안 입식지연 피해가 없음

* 관리지역(500m) 및 보호지역(3km)의 경우에도 21일 후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어 닭 입식 가능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에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예방적살처분(음성판정) 오리농가는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안정자금 지침

상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이동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

* 생계안정비용이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액보다 낮을 경우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

※ 법 제49조에 따라 생계안정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3]의 각 호에는 “구제역·ASF·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발생농장이 아닌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하여 입식지연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 구제역·ASF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